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○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(안 제19조의3)

-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 및 농어촌도로(2차선 이상)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
-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(10호 이상)으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(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이격)
- 국가 및 도 문화재,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-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
- 발전시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하며, 입목축적은 성주군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로 제한

○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(안 제19조의4)

- 공장(제2종근생 제조업소 포함),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), 묘지관련시설(라목)
-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(10호 이상)으로 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 제한 (10호 미만인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이격)

○ 법제처 권고사항 및 미비사항 개정

-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(안 제9조)
-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개정(안 제11조)
-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(안 제17조의2제3항)

- 토지분할 제한기준 삭제(안 제23조의2제3항)
- 공동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(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)
-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(안 제73조제1항)

○ 용도지구 통·폐합에 따른 변경
-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변경(안 제33조, 제35조제2호, 제38조)
- 미관지구, 시설보호지구 폐지(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 [기획감사실-6187('18.8.17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40603('18.7.17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'18.7.26. ~ '18.8.16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성주군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상의 거리 제한기준과 본 조례상의 대상지 경사도 및 입목 축적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규정하고

○ 공장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묘지 관련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법제처 권고사항, 타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 한편, 안 제19조의4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는 조항이나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허가기준을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방지와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